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2956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김장겸 · 박충권 · 조정훈  
박준태 · 박덕흠 · 최은석  
서범수 · 이상휘 · 서천호  
강대식 · 인요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기업 임원의 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해당 임원의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

기 전에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중 “실시”를 “및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산상 이해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증명서류를 같은 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무위원 검증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려는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생략) |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및 검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②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산상 이해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u>&lt;신 설&gt;</u>             |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증명서류를 같은 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